

『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4월 4일

나. 발 의 자 : 이지연, 김낙관, 김민성, 김영태, 김재우, 김정도,
박세채, 신용하, 이상호, 장미경, 정지원, 추은희
허민근 의원(13명)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4월 13일

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이 지 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기간 및 지원 범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
- 소재·부품 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산·중설 투자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과 구미시 인구 증가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및 근로자들이 정착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임대료 지원 기간 명시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예외 사항 규정 (안 제26조)
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이 신·증설 투자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6조의2)
-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 삭제
-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신설 (안 제29조의2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의2,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7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4. 5. ~ 4. 10.)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- 본 「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신·증설 투자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원,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,

- 유망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